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133
----------	-------

발의연월일 : 2026. 1. 19.

발 의 자 : 임종득 · 안철수 · 김예지
김기현 · 이달희 · 김정재
김상훈 · 서지영 · 서천호
윤상현 · 강명구 · 김승수
김성원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의 정비와 관련된 절차 및 체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민 공람 및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및 예산 제약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제약이 있으나 국가의 재정 지원 근거는 미비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됨.

덧붙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시·도지사로 설정되어 있어 전국적으로 표준적인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법적 근거가 미

비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빈집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하기 위하여 통합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국가가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및 제4조·제44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제3절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통합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집·관리되는 빈집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통합빈집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통합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합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제출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제2항 중 “시·도지사”를 “국가,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를 “국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시장·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지역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u><후단 신설></u> ③ ~ ⑧ (생략) <u><신설></u>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이 경우 시장·군수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통합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집·관리되는 빈집

	<u>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통합빈집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u> <u>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통합빈집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u> <u>③ 제1항에 따른 통합빈집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제출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44조(보조 및 용자) ① (생략)	제44조(보조 및 용자) ① (현행과 같음)
② <u>시·도지사</u>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자·	② <u>국가, 시·도지사</u> ----- ----- ----- ----- ----- -----

용자하거나 용자를 알선할 수 있다. ③ <u>시·도지사</u>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다. 1. ~ 4. (생략)	----- ---. ③ <u>국가 또는 시·도지사</u>----- ----- ----- ----- ----- -----. 1. ~ 4. (현행과 같음)
---	---